

동을 상세하게 쓰라는 것이었다. 그가 써낸 상세한 글은 도리어 정보제공자인 유일록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것이었지만, 5계는 ‘이같은 민단의 약점에 파고들었다’라는 해석을 내려버렸다.

솟아나온 용기

…… 그즈음부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재일 한국인유학생의 스파이조작을 목격하면서 아무런 힘도 돼주지 못한 채 그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에 대한 자책의 생각에, 유지길씨의 과감한 태도가 나를 격려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날, 유지길씨와 나와의 단 둘만의 때를 틈타, 나는 유지길씨에게 싸인을 보냈다. 눈만을 깜빡깜빡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지길씨는 처음에 명하니 있었는데, 나에게 “뭣입니까?”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숨겨 놓은 카메라는 내 등 위의 첫장 네 구석에 장치된 매직미러 너머에 있다. 나의 표정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 나는 제스처로 숨긴 카메라와 숨긴 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유지길씨가 살짝 웃었다.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눈만을 깜빡깜빡해서 알아차렸음을 알렸다. 그쪽 표정은 카메라에 비춰진다. “그만 뒤!”라고 나는 머리를 가로로 흔들었다.

5계는 장기전 태세로 들어갔다. 정보를 보완한다는 일로 유일록일파인 오까야마 민단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일본에서 불러오기도 하고, 유일록의 손발로 뛰는 윤충(尹忠)이라는 깡패를 일본에 파견해서 상은의 이사라는 간부에게 접촉시키는 등, 유지길씨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아 다녔다.

괴의자를 쉬게 해서는 안된다고 유지길씨에게 설사이없이 작문을 쓰게 했다. 이 작문을 번역하느라 우리 둘만이 심사실에 남곤 했다. 그런 시간에 나와 유씨는 동지가 되었다.

“작년에, 저 이원협에게 재일동포 여자 유학생들이 3개월 동안 끌려다닌 적이 있어요. 다행히 석방은 되었지만요. 알겠어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괴롭겠지만 힘을 내세요. 내가 보아온 젊은 학생은, 저들에게 잘 요리되어 감옥으로 갔습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

신이라면 든든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만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을!”

“걱정마세요. 죽어도 말 안 할께요.”

위험한 모험이지만, 내 나름으로 유지길씨라는 인물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벌써 이것은, 유지길씨 당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나는 재일동포가 여기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를 보아 왔어요. 당신의 싸움은 벌써 재일동포 전체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이 민족 전체의 싸움이구요.”

“알았습니다. 동감입니다. 최후까지 ‘노—!’로 일관해 싸우겠습니다.”

유씨의 눈물

장지동 분실에서는, 유지길씨를 회유하기 위해 불고기 대접도 했다. 회유는 여러가지 방법이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또 엘리베이터실이 사용되었다. 매일 살인적 폭력이 계속되었다. 5계는 그저 「입북」만을 추궁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어서 유지길씨는 1개월 이상 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다. 어느날 아침 김상린은 만면에 웃음을 띠우고 나에게 말했다.

“김병진씨, 겨우 실토했어. 저놈이 북에 있는 형을 생각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 김병진씨를 찾고 있으니 가서 위로해 줘”

심사실에서는 유지길씨가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다.

“…… 참으로 북에 갔다 왔습니까?”

유지길씨는 잠시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 그렇게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 기어이 쳐서 거짓말을 했읍니다 …….”

나는 명해 버렸다. 할 말이 없었다. 간신히 기력을 되찾아,

“할 수 없지요 …… 당신은 베릴 대로 베팅어요. 누구든 당신을 책망할 수는 없어요. 모두들 그러니까요 …….”

유지길씨의 눈물에 내 눈도 뜨거워졌다. 생명을 건 상황이 그렇게 시켰겠지. 능구렁이같은 김상린은 유씨를 위로한답시고 뒷마당에서 진짜 불고기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그전에 그렇게도 싸워 이기겠다고 황소처럼 먹던 그가 불고기를 한 점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언제 북에 갔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령 받았는가」를 유지길씨의 입에서 토해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유지길씨가 그런 것을 말해 낼 턱이 없기 때문이다.

모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보안사령부의 한 수사관의 말을 전하겠다. 유지길을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사령부의 김석진과 오까야마의 유일록 사이에 일이 성사만 되면 유는 김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기로 목계가 되었다는 것이다(지면관계로 세세한 부분은 생략함).

오까야마 민단 단장이 죄없는 유지길씨를 데려갔다고 보안사 수사분실에 나타났다. 민단의 다른 간부도 왔다. 5계는 미리 유지길씨로부터 강제녹음해 받은 소위, 자백테이프를 소장실에서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으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단장에게 거꾸로 “조총련에서 준 3백만 원의 선거자금을 유지길씨로부터 받았다”라는 공술을 강요했다. 박호순 수사과장까지 가세해서 재일한국인——오까야마의 재일한국인을 대표하고 있는 민단의 단장까지 수의복을 입혀, 폭행을 가하면서 엘리베이터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뒤집혀진 「자백」

유지길씨는 보안사의 손아귀를 떠났다. 서울지방검찰청 치안검사 정진철(鄭鎭哲)이 유지길씨의 담당검사가 되었다. 유지길씨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자백」을 뒤집어 엎었다.

유지길씨의 「입북시기」에 관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지길씨 자신의 일기장을 토대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북에 갔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게 되었다. 민단장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 이 일기장을 변호사에게 넘겨 주었던 것이다. 5계는, 윤충을 급히 일본에 파견해서 유일록과 협의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공술을 찾아내려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나는 신동기의 미국에서의 실언문제도 생각나서,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 전에 윤충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상린과 김석진은 나의 이 말에 당황해 벼

렸다. 즉석에서 윤충을 불러오기로 했다. 나는 오까야마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윤충은 외출 중이었다. 돌아오는 대로 한국에 전화를 걸라고 프론트에 일렀다. 그 다음날 윤충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지길씨는 「불기소처분」되었다. 검사 조서작성 단계에서 보안사령부의 수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유지길씨는 완전 무죄로 석방되었다.

（三）一九四〇年，平津「中華人民政府」的總理毛澤東，對日本的宣戰，是史家所稱的「毛澤東宣戰」。毛澤東宣戰之後，中國人民的抗戰，就由國民政府的抗戰，轉變為全國人民的抗戰，即所謂「全民族的抗戰」。

毛澤東宣戰之後，中國人民的抗戰，就由國民政府的抗戰，轉變為全國人民的抗戰，即所謂「全民族的抗戰」。毛澤東宣戰之後，中國人民的抗戰，就由國民政府的抗戰，轉變為全國人民的抗戰，即所謂「全民族的抗戰」。

毛澤東宣戰之後，中國人民的抗戰，就由國民政府的抗戰，轉變為全國人民的抗戰，即所謂「全民族的抗戰」。

조작극을 폭로하며

김 동완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I

1973년 6월이었다. 우리는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판자촌 지역주민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조직의 위원장에는 박형규 목사, 주무간사는 권호경 목사가 맡고 있었고 나는 회계를 맡아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다. 유신이 터지고 참담한 상황이었으나 우리는 흘어져 있던 몇몇 사람들을 모으고 답십리4동에 방을 얻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남산야외음악당에서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신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매스컴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도제목을 인쇄하여 돌리기로 결정하였다. 끌먹은 병어리와 같은 매스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여 어리석은 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유인물을 뿌리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인 신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어리석은 정권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제일 먼저 박형규 목사가 연행되었고 곧 권호경 목사가 연행되었기 때문에 나도 연행될 것에 대비하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끝에 다른 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규상 전도사가 이 사건의 남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숨어서 일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건 이후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나는 당시 사회선교협의회 총무였던 조승혁 목사에게 전화를 드렸다. 내가 기독교회관에 있던 조총무님 방을 찾은

것은 아침 10시 30분경이었다. 그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도권 일에 대한 의논을 하고—그때 이해동 목사도 함께 계셨다—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 3명이 들어와 “김동완이가 누구냐!”고 다그쳤다. 그들은 대학입학 당시의 나의 사진을 가져와 얼굴을 비교해 보더니 나를 나꿔쳤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전화도청을 통해 내가 조목사 사무실로 간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소지품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고서 손을 뒤로 제끼고 가죽허리띠로 묶어 끌고 나갔다. 나의 뒤로 조승혁, 이해동 목사도 각각 끌려나왔다. 나는 검은 짚차에 태워졌고, 두 목사님은 다른 차로 뒤따라 연행되었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짚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긴박감 속에서 내가 도착한 곳은 후에 알았지만 서빙고 보안사였다.

II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끈이 없는 방한화를 신었다. 곧바로 조사실에 들어서자 건장한 사나이 7~8명이 무수한 구타를 해댔다. 그들은 우리가 낸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 유인물은 네가 인쇄했지!”라며 죽쳐댔다. 나는 미리 설정된 가설대로 이규상 전도사가 했다고 떼어넘겨 잠시 순간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들은 이규상 전도사를 잡으려 다니느라 동분서주했고 나는 또다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때리고 나면 곧바로 군의관이 달려와 약을 바르는 등 치료를 해주었다. 죽지 않을 정도로 패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곤 했다.

지금까지 약 17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고문을 서너 차례나 당했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때 당했던 「엘리베이터 고문」이다. 엘리베이터실이라는 곳은 영화에서 본 가스실과 비슷하게 생긴 곳이었다. 의자에 사람을 앉게 하고 허벅지, 양팔꿈치, 허리를 모두 줄로 묶고 고문을 하며 때린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허공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그럴 때마다 가해지는 고통이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하부조직이 잡히지 않자 폭행에서 더 심한 것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이른바 성기 전기고문인데 성기에다 전기로 고문해서 고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그들을 불잡고 통신을 했다. “나는 장손이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이니 제

발 그 고문만은 삼가해 달라… 무엇이든 이야기하겠다”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해서 국부전기고문을 피할 수 있었다. 보안사에 끌려간 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당시 KSCF 회장이었던 나상기씨가 사람을 모으는 동원책임을 맡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성기에 고문을 받아 고자가 되지 않으려고 나회장의 이름을 댔던 것이다. 협박과 고문과 그들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계속 괴로운 고문을 받아온 나는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곳에서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목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사관들이 이 두 분이 쓴 조서를 가져와서 나에게 또다른 자백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나상기 회장의 이름을 댄 지 불과 이틀 후에 조그만 방에서 조사를 받는데 옆방에 나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 방에는 조그마한 거울이 있었는데 다른 방에 불을 켜자 거울이 유리로 바뀌었고 나회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대질 심문을 받았다. 나회장이 들어온지 이틀 후에도 황인성 총무, 정명기 목사 등 당시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잡혀왔다.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받았었는지는 형용기 어렵다. 결국 이같은 고문을 수반한 강요에 의해 ‘내란예비음모’라는 조작에 도달한 것이다. 처음에는 간첩으로 몰려고 하다가 그같이 조작해냈다. 남산야외음악당에 모인 대중을 선동해서 KBS를 점령하고 정부청사를 점령해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으로 각본은 짜여졌고, 그 각본의 완성을 위해 매와 고문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자연히 음모의 수괴는 박형규 목사가 되고, 남삼우씨(당시 신민당 간부)가 정치적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 가해지면서 “이 내란음모가 성공하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는 가당치 않은 자백이 강요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대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결국 각본대로 문공부장관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진술하게 되었고 그 허위진술서에 서명을 하고야 말았다. 더이상 매를 맞을 수도 고문을 당할 수도 없었으므로 나는 재판을 받게 되면 기필코 이 사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각오 아래 허위진술서에 서명한 것이다.

III

결국 보안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본에 의해 그들의 각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매와 고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 각본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나의 슬픈 과거를 회상하며 글을 쓰는 지금도 끔찍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조작되어 잡혀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강요에 의해 각본대로 진술하게 됨으로 ‘내란예비음모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문호철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검찰청도 아닌 용산호텔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곳에서 박형규, 권호경, 남삼우씨 등의 조사서와 구속영장이 만들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목사가 주관하는 내란예비음모 사건이 되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보안사가 최초로 만든 이 사건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은 당시의 공소장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별지(피고인)

1. 본적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50의 28호

주거 상동

직업 서울제일교회 목사

가. 성명 박형규(朴炯圭)

1923. 12. 7생(49년)

2. 본적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108번지

주거 서울시 성북구 월계동 841의 2호(10동)

직업 서울제일교회 전도사

가. 성명 권호경(權皓景)

1942. 4. 20생(31년)

3. 본적 경기도 인천시 동구 송림동 47번지

주거 경기도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16번지

직업 무직

가. 성명 남삼우(南三祐)

1939. 7. 23생(34년)

4. 본적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508번지

주거 서울시 성북구 상계3동

직업 무직

나. 다. 성명 이종난(李鍾難)

1946. 8. 17생(26년)

공소사실

피고인 박형규는 1950. 6경 부산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55. 3경 일본 동경신학대학 4학년에 편입하여 1959. 3경 동대학 대학원 2년을 수료한 후 그때부터 1964. 10경까지 서울 공덕장노교회 목사, 1965. 1경부터 1966. 3경까지 서울 초동교회 목사로 각 종사타가 그후 베다니 평신도학원 원장, 한국기독교학생회 총무, 월간 기독교사상지 주간, 기독교방송국 상무 등을 거쳐 1971. 5경부터 서울 중구 오장동 101의 1호 소재 서울제일교회의 목사로 종사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 평화원, 한국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정책분과 위원회 회장, 동 발전위원회 회장, 동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 회장, 한국현대선교협의체 이사장,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동 권호경은 1969. 2경 한국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동년 3월경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소재 새발교회 전도사로 종사타가 1971. 8. 1 상기 서울제일교회 전도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1972. 4초순경부터 상기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주무간사로 동 박형규의 지시를 받으며 동대문구 답십리2동 소재 청계천변 빙민가에서 빙민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동 남삼우는 1960. 2경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4. 10경부터 인천 대건중학교 교사로 제직타가 1967. 12경 민중당에 입당하여 1968. 1초경 신민당 조직국 제2부차장을 역임하고 1970. 8경 신민당을 탈당함과 아울러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으로 활약중 1971. 1경 국민당 인천갑구당 위원장에 피선되었으나 동년 5월경 제8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에서 탈락되자 동당을 탈당한 이래 무직으로 현재에 이른 자이고,

동 이종난은 부산 배정중학교를 거쳐 1965. 2. 일자불상경 동 배정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1966. 10. 7 해병 제183기 사병으로 입대하여 근무다가 1971. 10. 30 하사로 만기 제대한 후 1971. 11. 2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번지의 5호에서 참새구이 및 대포집 촌놈싸롱을 경영다가 1973. 4. 일자불상경 폐업하고 그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여 오던 자 등인바,

1. 피고인 박형규는 현정부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이른바 3선개헌을 단행하여 장기집권을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부정부폐했으며 더욱이 10월유신으로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한 독재정권으로 단정하고, 동 권호경은 현정부는 5·16 이후 장기집권을 하여 오면서 온갖 실책을 범해온 독재정권일 뿐 아니라 10월유신의 지지를 강요하는 등으로 기독교를 극히 탄압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동 남삼우는 현정부는 영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독재정권일 뿐 아니라 고급 공무원들의 부정부폐가 극심하고 과중한 조세부과로 국민들이 생활고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동시에 제반 실책으로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단정한 나머지 각각 현정부에 대하여 극도의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있던 자들로서 수시로 회합하면서 동 불평불만을 토로하여 오던중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이가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지득하게 되자 현정부에 충성을 다하던 윤필용이가 구금된 것은 현정권에 분열이 생긴 것이고 군부 내에도 혼란이 왔으며 국민은 세금문제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민심이 동요되고 있으므로 현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 믿은 나머지,

가. 1973. 4. 14 : 00 상기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동 박형규, 동 권호경 및 동 남삼우 등 3인이 회합하여 현정부시책을 비난 성토하던 중에 동 남삼우가 윤필용 장군이 남북대화와 10월유신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체포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동 박형규는 반공에 앞장섰던 윤장군으로서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이어 동 권호경이 현정부의 독재적이고 무법적인 처사를 더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기독교 세력과 과거의 야당세력이 봉기하여 윤필용 추종세력의 지지를 받아 현정부를 타도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동 박형규와 동 남삼우의 공명을 얻은 다음 그 실행방법을 논의한 끝에 동년 4. 22 남산야외음악당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릴 때 동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윤필용 장군을 구출하자는 등으로 선동, 일제히 가두 폭력데모를 전개하여 현정부를 타도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동 권호경과 동 남삼우가 수립키로 하는 동시에 동 권호경은 모든 거사준비를 맡아보고, 동 남삼우는 과거 데모 경력이 많고 야당활동을 한 이철홍을 포섭하여 행동대원을 확보도록 하며, 동 박형규는 거사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나. 동년 4. 8. 10 : 00경 상기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동 박형규는 동 남삼우로부터 동인이 포섭하여 같이 데리고 온 공소외 이철홍(33세)을 소개받고 동인에게 야당생활에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독재와 억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동하여 동인으로부터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현정권 타도에 앞장서겠다는 의사표명을 듣고,

다. 동년 4. 14. 10 : 00경 상기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동 권호경과 동 남삼우가 회합하여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논의한 끝에 동년 4. 22. 05 : 00경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장에 독재정권 타도하자, 윤필용을 구출하자는 내용의 프랭카드와 빠라를 지침한 행동대원들을 투입하여 약 6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배군중 속에 배치시켜 두었다가 예배가 끝날 무렵 일제히 프랭카드를 쳐들고 빠라를 살포하면서 예배 주최측에서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배군중들을 선동, 행동대원들의 선도아래 서울시내를 향하여 폭력데모를 전개도록 하고, 데모대가 동 음악당을 벗어날 때 데모대를 양분하여 그중 일대를 동 남삼우의 지휘로 서울중앙방송국으로 진출케 하여 동 방송국을 점거한 다음 현정부 타도를 위해 전국민이 호응할 것을 호소하고, 다른 일대는 동 권호경의 지휘로 서울시내로 진입하여 중앙청과 국회 의사당을 비롯한 중요 관공서를 파괴, 점거하고 서울시내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 일반 국민과 윤필용 장군 추종세력의 지지아래 현정부를 강제로 축출 타도하고 각계 각층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로 임시 통치기구를 구성한 후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동 기구가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통괄하여 과도적으로 통치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키로 하되 각자의 분담 임무로서 동 박형규는 자금조달과 배후 조종을, 동 권호경은 거사계획 실행 총지휘 및 빠라 제작 등을, 동 남삼우는 행동대원 확보와 프랭카드 제작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한 다음 동 남삼우는 동일 13 : 00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덕수궁 정문앞에서 상기 이철홍을 만나 동 덕수궁내 분수대옆 의자에 앉아 동인과 회합하며 동인에게 위와 같은 현정부 타도계획을 설명하여 주고, 거사일에 폭력데모에 앞장설 행동대원 15명을 포섭, 동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여 동 이철홍으로 하여금 신민당 청년단원들인 진산전, 김동윤, 이용일 및 이계곤 등 수명을 포섭케 하고,

라. 동년 4. 16. 11 : 00경 상기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동 권호경은 동 박형규와 회합하고, 동 박형규에게 상기 다항 내용과 같이 결정한 거사계획을 설명하며

자금지원 요구를 하자 동 박형규는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거사 자금조로 금 10만 원을 동 권호경에게 교부하고, 동 권호경은 동일 19:00경 상기 서울제일교회 부근에 있는 “차”다방에서 동 남삼우와 회합하여 거사계획 실행을 거듭 다짐하면서 동 남삼우에게 동 박형규로부터 받은 자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동 남삼우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상기 이철홍을 접선하여 동인에게 상기 금원 중 금 40,000원을 교부하면서 틀림없이 행동대원 15명을 확보토록 다짐하고,

마. 동년 4. 19. 17: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파리다방에서 동 권호경과 동 남삼우가 회합하여 거사시에 사용할 프랭카드 문안을 작성키로 합의하고 동일 19: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번지불상 소재 동 남삼우의 형 남선우 집으로 가서 일박하면서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도여 부활하신 왕 주님의 힘으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반공으로 지킨 조국 독재국가 웬말이냐, 민주주의는 통곡한다, 자유를 위하여 죽을 울리자,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이후락부장,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사울왕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프랭카드 문안을 작성한 다음 동년 4. 20. 12:00경 동 남삼우가 동대문시장에서 프랭카드용으로 광목 40마짜리 한 필을 금8,000원에 매입하여 동일 13:00경 상기 남선우 집에서 동 이철홍과 같이 동 광목으로 프랭카드 원단을 만든 다음 동 이철홍이 가동 프랭카드 원단 6매와 금30,000원을 동 남삼우로부터 교부받아 동일 22:00경 시내 서대문구 신촌 로타리에 있는 왕자다방에서 동 남삼우와 동 이철홍 등은 그간 포섭된 진산전과 접선하여 동소 근방에 있는 옥호미상 보신탕집으로 옮겨 회합하면서 동 남삼우는 동 진산전으로부터 행동대원들을 전부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동 이철홍이 소지한 프랭카드 원단과 금15,000원을 동 진산전에게 교부하여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거사시에 쳐들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편 권호경은 동일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담십리동 번지불상 소재 임시 거소에서 같이 빈민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공소외 반석교회 전도사인 김동완(31세)에게 4. 22 새벽에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계기로 하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현정권을 뒤엎는 거사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에 협력을 하여야 되겠는데 그날 예배군중들에게 빠라를 살포하여 군중을 선동할 수 있는 기독교학생들을 포섭하고 살포할 빠라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인 4. 21.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왔느니라,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 부

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화입을진저 위정자여, 국민주권 대부받아 전당포가 웬말이냐, 회개하라 이후락 부장,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이여 어서 읍소서, 73년도 부활주일 새벽에”라는 내용의 빠라문안을 작성, 동인에게 교부하면서 빠라를 제작하여 행동대로 포섭한 기독교학생들로 하여금 부활절예배가 끝날무렵 프랭카드가 올라가면 살포하라고 지시하므로써 동 김동완으로 하여금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회장 나상기를 포섭하여 동인을 통하여 확인성, 이상윤, 정명기, 서창석 등 수명의 학생들을 확보하고 공소외 이규상과 같이 상기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야간을 이용 빠라 2,000여 매를 등사한 다음 동 나상기 등에게 인계하여 살포토록 하였고, 동일 17:00경 상기 파리다방에서 동 권호경과 동 남삼우가 회합하여 거사계획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함과 아울러 각자 분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동년 4. 22. 05:00경 동 박형규는 단독으로 동 권호경은 상기 김동완을 대동하고 동 남삼우는 상기 이철홍을 대동하고 각각 상기 음악당에 도착 접결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예배장내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내란을 예비하고,

2. 피고인 이종난은 1973. 4. 30. 13: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다방에서 공소외 이계곤으로부터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적혀있는 폭 30센치미터, 길이 2미터 가량의 프랭카드를 입수한 후 동 프랭카드는 동 이계곤, 동 진산전, 동 김동윤(일명 : 김동범) 및 동 이용일 등이 1973. 4. 22. 06:00경 남산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부활절 연합예배당시에 반정부데모용으로 사용하려던 프랭카드임을 인지하고 동인들에게 서울지구 506보안부대 근무하는 이중사라고 사칭하고 동인 등이 불온한 내용의 프랭카드를 소지하였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가. 1973. 5. 2. 15:00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상호불상 대포집에서, 동 이용일과 음주하던중 동 이용일이 프랭카드를 반환하라고 간청하자 동인에게 당신의 배후에 진산전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동월 3일 동구 의주로1가 소재 서대문경찰서 옆 유립다방에서 동 이용일, 동 진산전 등과 만난 자리에서 동 진산전에 대하여 나는 506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이중사인데 이 프랭카드 사건을 가지고 출세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처분만 믿고 한 번 봐주느냐하는 중대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하여 동인 등이 금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입건구속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동인 등을 협박하고 이에 외포된 동 진산전으로부터 그시경 동소에서 금20,000원을, 동월 9일 14:00경 동소에서 금2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동월 12. 14:00경 동구 홍제동 소재 청자다방 및 동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상호불상 중국요리집 등에서 동 김동윤에 대하여 전시2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협박을 하고 이에 외포된 동인 등으로부터 동월 20. 16:30경 동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중앙일보사 건너편에 있는 "여로"다방에서 금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동월 17. 15:00경 동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상기 동 진산전, 동 김동윤, 동 이용일, 동 이계곤 등을 모아놓고 동인 등에게 서울지구 506보 안부대에 근무하는 이중사라고 하면서 프랭카드의 제조 및 소지경위와 목적 등을 수사하여야 한다면서 16절 쟁지와 불펜을 사용하여 동 진산전 등 4명에 대한 문답식조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다.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목사, 남삼우씨는 구속되고 나머지 청년 학생들은 구류 29일에 처해졌다. 이 세 분의 재판은 진행되었고 교도소로 수감되었다. 이 분들은 1심이 끝나고 보석금을 내고 나왔으나, 권호경 목사는 그후 긴급조치로 15년 형을 받았는데 내란예비음모와 병행해서 17년 형을 받고 구속중 75년 2·15조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박목사는 다른 사건으로 5번이나 구속되었지만 병합심리가 되지 않은 채 석방되었으며 88년 2월에 재판이 재개되어 4월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형사 부

판 결

사 건 77노 1483 내란예비

피 고 인 박 형 규(朴 炳 圭) 목사

1923. 12. 7생(231207-1019110)

주거 및 본적 서울 성동구 송정동 50의 28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양 현 국

변 호 인 변호사 박 승 서, 한 승 현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9. 25선고 73고합 518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내란예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먼저 범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정부를 전복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군중의 7할이 부녀자들인 기독교인들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에 이들에게 프랭카드 몇장을 펼쳐보이고 또 전단 등을 배포하였다 하여 정부의 치안을 파멸상태로 돌아가게 할 정도의 내란, 폭동이 일어날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그와 같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불능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세째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육군보안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하여 공포상태가 지속된 상황아래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임의성이 있고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결여되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정부전복 예비음모행위가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것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원심판결 파기사유

먼저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판결은 변호인이 권호경, 남삼우와 만나 1973. 4. 22. 새벽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끝난 후 신도들을 선동하여 폭력테모를 전개하여 현정권을 타도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금 10만 원을 권호경에게 교부하고, 권호경, 남삼우는 프랭카드와 전단을 제작하여 그날 예배가 끝나면 프

랭카드를 펼치고 전단을 배포할 행동대원을 포섭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형법 제90조 제1항의 내란예비죄가 된다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 바, 유죄의 증거로서는 먼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으나 폭력테모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며,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폭력테모 후 행동대원들이 중앙방송국과 중앙청 등을 점거, 정부타도를 할 목적으로 프랭카드와 전단을 만들고 행동대원을 포섭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권호경, 남삼우들은 원심공판정에서 일관하여 폭력시위를 목적으로 한 점을 부인하고 다만 유신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위한 기도제목으로 프랭카드와 전단을 만든 사실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폭력시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검사앞에서의 자백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공판기록 237장)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당심 공판정에서의 진술, 권호경의 당심공판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권호경, 남삼우는 육군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도 고문한 수사관이나 그 동료 수사관이 출입하는 가운데 공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되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원심의 제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에 관한 일부를 기재한 서면에서도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성립을 인정하고 일부임의성을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권호경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제4차 공판조서는 원심 마지막 공판기일의 조서로서 원심판결선고 전에 이를 변호인들이 열람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당심에 이르러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다음 피고인의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당심 제4, 5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김동완, 황인성, 나상기, 권호경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권호경, 남삼우는 1973. 7. 6.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6월말경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연행되

어 심한 매를 맞는 등 고문을 당한 후에 검사의 동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권호경에 대한 진술조서와 군수사기관원이 출입하는 가운데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신용산 호텔에서 이른 새벽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1973. 6. 28경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하여 연행된 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위 권호경, 공소외 나상기 등이 고문을 당하여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하는 등 고통을 당하면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강제로 쓴 다음 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7. 6. 새벽 신용산 호텔에서 육군보안사 수사관이 입회한 가운데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외포상태가 계속된 상태하에서 위 진술서를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였고, (구속영장의 기재도 집행장소는 신용산 호텔, 집행일시는 1973. 7. 6. 12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서울 구치소로 구속된 후 검사에게 4-5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서빙고로 끌려갈 것이다. 시인을 안한다고 해서 결코 당신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니 빨리 재판을 받으려면 정부전복의 거사라는 말만 시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부하들만 더 고생시킨다”고 집요한 위협과 강요를 받은 끝에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작성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검사의 피고인 및 위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권호경에 대한 진술조서는 불법구속 후에 변호인 선임이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진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아래에서의 자백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정황적 보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보면 검사의 나상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인이 남산 부활절예배 장소에 반정부적 내용의 빠라를 살포하였다는 취지이고, 검사작성의 서창석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위 예배장소에 같은 내용의 빠라를 뿐했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장철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예배장소에 경비근무를 하다가 예배가 끝난 후 남아 있는 수상한 사람을 수색하여 이 사건 압수물인 빠라를 압수하였다는 것이며, 이용일, 이계곤 작성의 각 진술서는 위 예배장소에 이 사건 압수물인 프랭카드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이고, 이상윤, 황인성, 정명기 작성의 각 진술서는 위 예배장소에 이 사건 압수물인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이며, 압수된 전단 9매(증 제1호), 전단 10매(증 제2호)는 “회개하라 때가 가까왔느니라,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화입을 진저 위정자여, 국민주권

대부 받아 전당포가 웬말이냐, 이호락 부장은 회개하라,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이여 어서 읍소서, 73년도 부활주일 새벽에”라는 내용이 기재된데 불과하고, 등사기 1대(증 제3호)는 위 유인물을 등사한 등사기일 뿐이고, 프랭카드 1개(증 제4호)는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도여 부활하신 주님의 힘으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반공으로 지킨 조국 독재주의 웬말이냐, 민주주의는 통곡한다, 자유를 위하여 종을 올리자,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이후락 부장,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사울왕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내용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그 실행계획을 모의를하거나 그 예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이와 같이 임의성 없는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채증과정에는 증거법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73. 4. 2. 14 : 00 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위 원심공동피고인인 권호경 및 남삼우와 회합하여 현정부시책을 비난 성토하던 중에 남삼우가 윤필용 장군이 남북대화와 10월유신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체포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반공에 앞장섰던 윤장군으로서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이어 위 권호경이 현정부의 독재적이고 무법적인 처사를 더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기독교 세력과 과거의 야당세력이 봉기하여 윤필용 추종세력의 지지를 받아 현정부를 타도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남삼우의 공명을 얻은 다음 그 실행방법을 논의한 끝에 동년 4. 22. 남산야외음악당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릴 때 동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윤필용 장군을 구출하자는 등으로 선동, 일제히 가두 폭력데모를 전개하여 현정부를 타도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 권호경과 남삼우가 수립키로 하는 동시에 권호경은 모든 거사준비를 맡아보고, 남삼우는 과거 테모 경력이 많고 야당활동을

한 이철홍을 포섭하여 행동대원을 확보토록 하며, 피고인은 거사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2) 동년 4. 8. 10 : 00경 상기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남삼우로부터 동인이 포섭하여 같이 테리고 온 공소의 이철홍(33세)을 소개받고 동인에게 야당생활에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독재와 억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동하여 동인으로부터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현정권 타도에 앞장서겠다는 의사표명을 듣고,

(3) 동년 4. 14. 10 : 00경 위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위 권호경과 남삼우가 회합하여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논의한 끝에 동년 4. 22. 05 : 00경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장에 독재정권 타도하자, 윤필용을 구출하자는 내용의 프랭카드와 빠라를 지침한 행동대원들을 투입하여 약 6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군중 속에 배치시켜 두었다가 예배가 끝날 무렵 일제히 프랭카드를 쳐들고 빠라를 살포하면서 예배 주최측에서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군중들을 선동, 행동대원들의 선도아래 서울시내를 향하여 폭력데모를 전개토록 하고, 테모대가 동 음악당을 벗어날 때 테모대를 양분하여 그중 일대를 동 남삼우의 지휘로 서울중앙방송국으로 진출케 하여 동 방송국을 점거한 다음 현정부 타도를 위해 전국민이 호응할 것을 호소하고, 다른 일대는 동 권호경의 지휘로 서울시내로 진입하여 중앙청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중요 관공서를 파괴, 점거하고 서울시내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 일반 국민과 윤필용 장군 추종세력의 지지아래 현정부를 강제로 축출 타도하고 각계 각층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로 임시 통치기구를 구성한 후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동기구가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통괄하여 과도적으로 통치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키로 하되 각자의 분담 임무로서 피고인은 자금조달과 배후 조종을, 권호경은 거사계획 실행 총지휘 및 빠라 제작 등을, 남삼우는 행동대원 확보와 프랭카드 제작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한 다음 남삼우는 동일 13 : 00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덕수궁 정문앞에서 위 이철홍을 만나 덕수궁내 분수대옆 의자에 앉아 동인과 회합하여 동인에게 위와 같은 현정부 타도계획을 설명하여 주고, 거사일에 폭력데모에 앞장설 행동대원 15명을 포섭, 동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여 동 이철홍으로 하여금 신민당 청년당원들이인 전산전, 김동윤, 이용일 및 이계곤 등 수명을 포섭케 하고,

(4) 동년 4. 16. 11 : 00경 위 서울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위 권호경은 피고인과 회합하고, 피고인에게 위 3항 내용과 같이 결정한 거사계획을 설명하며 자금지원 요구

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거사 자금조로 금 10만 원을 위 권호경에게 교부하고, 권호경은 동일 19:00경 위 서울제일교회 부근에 있는 "차"다방에서 남삼우와 회합하여 거사계획 실행을 거듭 다짐하면서 남삼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동 남삼우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이철홍을 접선하여 동인에게 상기 금원 중 금40,000원을 교부하면서 틀림없이 행동대원 15명을 확보토록 다짐하고,

(5) 동년 4. 19. 17: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파리다방에서 위 권호경과 남삼우가 회합하여 거사시에 사용할 프랭카드 문안을 작성키로 합의하고 동일 19: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번지불상 소재 동 남삼우의 형 남선우 집으로 가서 일박하면서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도여 부활하신 왕 추님의 힘으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반공으로 지킨 조국 독재국가 웬말이냐, 민주주의는 통곡한다, 자유를 위하여 종을 울리자,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이후락부장,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사울왕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프랭카드 문안을 작성한 다음 동년 4. 20. 12:00경 위 남삼우가 동대문시장에서 프랭카드용으로 광목 40마짜리 한 필을 금8,000원에 매입하여 동일 13:00경 위 남선우 집에서 이철홍과 같이 위 광목으로 프랭카드 원단을 만든 다음 이철홍이가 동 프랭카드 원단 6매와 금30,000원을 동 남삼우부터 교부받아 동일 22:00경 시내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에 있는 왕자다방에서 남삼우와 이철홍 등은 그간 포섭된 진산전과 접선하여 동소 근방에 있는 옥호미상 보신탕집으로 옮겨 회합하면서 동 남삼우는 동 진산전으로부터 행동대원들을 전부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철홍이가 소지한 프랭카드 원단과 금15,000원을 진산전에게 교부하여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거사시에 쳐들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편 권호경은 동일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불상 소재 임시거소에서 같이 빈민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공소의 반석교회 전도사인 김동완(31세)에게 같은 해 4. 22. 새벽에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계기로 하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현정권을 뒤엎는 거사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에 협력을 하여야 되겠는데 그날 예배군중들에게 빠라를 살포하여 군중을 선동할 수 있는 기독교학생들을 포섭하고 살포할 빠라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인 4. 21.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왔느니라,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화

입을진저 위정자여, 국민주권 대부받아 전당포가 웬말이냐, 회개하라 이후락부장,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이여 어서 읍소서. 73년도 부활주일 새벽에"라는 내용의 빠라문안을 작성, 동인에게 교부하면서 빠라를 제작하여 행동대로 포섭한 기독교학생들로 하여금 부활절예배가 끝날 무렵 프랭카드가 올라가면 살포하고 지시함으로써 동 김동완으로 하여금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회장 나상기를 포섭하여 동인을 통하여 황인성, 이상윤, 정명기, 서창석 등 수명의 학생들을 확보하고 공소의 이규상과 같이 상기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야간을 이용, 빠라 2,000여 매를 등사한 다음 동 나상기 등에게 인계하여 살포도록 하였고, 동일 17:00경 상기 파리다방에서 권호경과 남삼우가 회합하여 거사계획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함과 아울러 각자 분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동년 4. 22. 05:00경 피고인은 단독으로 권호경은 위 김동완을 대동하고 남삼우는 위 이철홍을 대동하고 각각 상기 음악당에 도착 접결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예배장내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내란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4. 내란예비의 구성요건과 증거 판단

일반적으로 내란예비라 함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 행위로서 폭동의 도구로서의 무기, 화염병을 준비하거나 자금의 조달, 폭동군중을 조직적으로 집합시키는 것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내란죄의 실행행위라 함은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할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헌문란 행위 중 형법 제91조 제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동행위"의 예비를 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국헌문란의 실행행위가 되는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은 그 폭동의 직접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그 폭동을 계기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폭동에서 국헌문란의 사태가 나타남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폭동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위력으로 폭행 협박함을 요하고 그 다수인의 결합은 조직화되어 분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를을 요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법정이래 당시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권호경, 남삼우 등에게 국민을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의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1973. 4. 22.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장소에 가서 프랭카드에 정부의 비리를 알리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함께 기

도하자는 것을 알려주자고 말했으며, 농담조로 “뜻있는 일”을 알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어도 정부전복을 실행할 구체적 논의는 한 바가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권호경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미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시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권호경, 남삼우 등에게 정부가 10월유신으로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고 부당하게 교회의 설교내용을 제한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부정부폐가 심하니 1973. 4. 22. 새벽에 남산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기독교연합 부활주일 새벽예배에 모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를 예배군중들 틈에서 처들게 하자고 말하고, 그 프랭카드 제작 비용조로 금 10만 원을 위 권호경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권호경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남삼우에게 교부하고 프랭카드에 기재할 문안을 함께 작성하였으며 남삼우는 공소의 이철홍, 진산전 등 10여명을 시켜 이 사건 프랭카드를 제작, 위 예배장소에 가져오게 하고, 권호경은 공소의 김동완을 시켜 전단 2,000장(위 증 제1, 2호는 그중 일부임)을 제작케 하였으며, 피고인은 윤필용이 쿠데타 음모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고 널리 알리자고 말하여 이 프랭카드와 전단의 작성시에 “윤필용 장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는 문언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권호경, 남삼우와 함께 위 프랭카드와 전단에 기재된 문언 등을 위 예배군중에게 알림으로써 유신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회복을 염원하는 작은 항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리라는 짐작은 할 수 있으나 당시와 같이 시위가 극도로 통제된 유신 직후의 삼엄한 사회 사정아래에서 시위를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아래에서 몇 개의 프랭카드와 전단 살포로써 많은 사람이 시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예배에 모인 많은 군중이 시위에 가담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찬송가 책만을 소지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군중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폭력으로 방송국을 점령하거나 중앙청 등 정부의 중요기관을 점거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나 위 권호경, 남삼우가 위 예배군중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전에 조직화하였다거나 그 당시에 피고인 등의 지휘에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정부기관을 전복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위 예배군중의 시위에 호응하여 새로운 시위군중이 폭동화할 것을 기대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설혹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이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어서 이를 내란의 목적 속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프랭카드나 전단에 “윤필용 장군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내용을 위 예배군중에게 알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윤필용 장군의 추종세력을 폭동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윤필용 장군의 추종세력 중 누구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폭동에 끌어들인다는 것인지 공소장 자체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실행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설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폭력시위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진술은 그 진술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및 신빙성이 모두 배척되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이상 달리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작성의 김동완, 진산전, 김동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피고인 및 권호경, 남삼우 및 이철홍 작성의 각 진술조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에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5. 27

재판장 판 사 죄 공 옹

이렇듯 명백한 무죄사건을 고문과 폭력과 조작에 의해 내란에비음모라는 끔찍한 사건을 만든 것이었다. 두 말할 나위없이 보안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IV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빌어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사건이 처리되어 박목사 등 3인은 구속 송치되고 김동완, 나상기 등 다른 관련자는 구류를 살게 했다고 신문지상에도 발표해 놓고, 보안사는 또 한번 조작을 해서 김동완과 나상기를 검찰측 증인으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구류를 보내지 않은 채 서빙고에 4일간 더 불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고 전화로 보고하게 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하수인으로 쓰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점이다.

구류를 살지도, 감옥을 가지도 않은 두 사람이 4일간 있었던 방은 약 50평 가량이나 되었다. 조사를 받던 방 중 가장 큰 것이 7평 정도에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대개 두 평 남짓한 지하실의 방이었던데 비하면 대궐같은 방이다. 이 방은 고등간첩을 장기간 체류시키면서 회유시키는 VIP간첩용 방이었다. 나로서는 세상에 살면서 제일 좋은 방에서 몇일을 기거한 셈이 된 것이다. 나상기와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법정에서 증인을 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술책의 하나였다.

나도 그곳을 나와 3~4일간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며 심부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끝내 이들에게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을 피하여 한 달 동안 지방으로 숨어 다녔다. 나상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벗어났으며 검찰측 증인으로도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과 같으면 인권단체를 찾아가 이런 사정을 증언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지만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장 겁이 나고 무섭고 다시 잡혀 고문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부끄럽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안사의 고문이 얼마나 잔인했었나를 반증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 사건에 연계되어 들어가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터인데, 우직하게 견디다가 함정에 빠져 그들의 요구대로 한 단계씩 일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어린시절의 나의 모습과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시는 보안사에서 이같은 조작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군에 충성한다

고 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조작극을 만들으로 해서 한반도의 분열과 조국의 자주와 민주화에 방해가 되는 군인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나의 옛일에 대한 고백을 마친다.

악몽같은 보안사에서의 체험

황 인성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

문밖이 다소 소란한 탓에 눈을 떴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대문간에서 누구와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창밖이 가까스로 희뿌옇게 밝아오는 이른 새벽이었다.

이윽고, 당황한 얼굴로 아주머니가 방 앞에 와 잠깐 나와보라고 한다.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방문을 열고 나서니, 건장한 잠바차림의 사내가 댁들 앞에 서있다가 나를 보자 대뜸, “학생이 황인성이야?”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불쑥 신분증을 꺼내 코앞에 들이대었다. 분홍색 바탕에 상반신 사진이 붙어 있었고 밑에는 국군보안사라고 써어 있었다.

물어볼 일이 있으니 잠깐만 같이 가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난생 처음으로 소위 ‘기관’이라는 데서 나온 사람과의 대면이다. 왜냐고 물었다. 가보면 안다고 한다.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나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손을 잡아챘다.

집을 나서니 보안사 요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리고 하숙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태웠다. 택시는 중앙청 앞을 지나 서소문으로 접어들었다. 차속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아마 4월달에 남산에서 친구, 선배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 뿐던 전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해 4월의 일이었다. 그날 오후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학생사회개발단 세미나를 마치고 나올 때, 당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회장인 나상기 형으로부터 당일 밤 9시에 서울제일교회 입구에 있는 다방으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당시는 바로 그 전해인 72년 10월, 난데 없는 계엄선포와 함께 국회가 해

산되고 비상 국무회의라는 초현법적 기구에 의해 제반 악법이 양산되고, 전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킨 대표적인 파쇼헌법인 유신헌법을 형식적인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유신 첫 해였다.

71년 위수령으로 주요대학이 탱크에 의해 점령당하고, 학생운동에 참여한 선배와 친구들이 모조리 연행되어 구속당하거나 용산역에서 논산 육군훈련소로 직행당한 후 1년만에 또다시 대학은 군화발 아래 능욕당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비판적 권리가 암살당한 상태에서 평소 활동적인 야당의 원들이나 언론인들이 기관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문을 당하고 더러는 구속되고, 또 풀려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극도의 공포분위기가 전 사회를 휩쓸고 있었다.

일체의 국민권리를 묵살하고 1인의 절대화와 영구집권을 보장한 유신통치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뇌까리고 있는 암울한 상황을 피끓는 젊은 학도들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72년 늦가을과 겨울에 걸쳐 전남대와 고려대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유인물 살포와 유신헌법지지 포스터와 슬로건을 불지르는 등의 저항행동이 있었으나 관련학생들은 곧 검거되어 『합성』지 사건, 『민우』지 사건 등의 국가보안법사건으로 조작발표되었다.

이같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은 73년 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대한가톨릭대학생연합회, 대학YWCA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4·19혁명 기념행사인 「부활과 4월혁명」 강연회 역시 유신 이후 첫 학생공식집회라는 점에서 중앙정보부의 악랄한 탄압을 받았다.

강연회 강행시 전 임원을 연행조사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행사준비를 끝냈으나, 막상 행사 당일에는 집회장소인 명동성당의 입구를 경찰을 풀어 봉쇄하는 바람에, 명동성당 건너편인 YWCA사무실을 급히 치우고 공간을 만들어 행사장에 왔다가 돌아가는 학우들을 비밀리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불러모아 1시간 뒤에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겨우 행사를 강행했다. 비록 궁색한 행사의 성사였지만, 당시에는 저들의 협박과 봉쇄를 뚫고 조그마하게나마 우리의 것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신감을 주는 통쾌한 일이었다.

나상기 형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다. 약속시

간에 다방으로 나갔더니 벌써 친구들과 낯익은 선배들이 와 있었다.

20여 분 정도 기다려 몇 사람이 더 오자, 나상기 형의 지시에 따라 근처 여관으로 옮겼다. 방 두 개를 얻어 나누어 든 뒤에 다들 유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손발을 썼었다. 오랜만에 모여 단합대회나 하려는 모양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한참 후에 누군가의 연락으로 두 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한 방에 모이자, 나상기 형이 방 구석에 있는 꾸러미를 풀어 전단을 꺼내 놓았다. 32절지 정도의 시험지에 필사체로 등사해 만든 전단이었다.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작해 당시의 폭압적인 정치상황을 종교적 필치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야기는 간단했다. 이 전단을 다음날 새벽에 남산 부활절예배에 모인 교인들에게 뿌리자는 것이었다.

다들 왜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눈치를 챘는지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누군가 싱거운 농담을 전네는 정도였다. 그리고는 각기 200~300매 정도씩 나누어 가방에 꾸려넣고는 같이 행동할 팀을 정했다. 그리고는 과일과 음식을 사와서 나눠 먹고 잤다.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각기 정한 대로 남산에 가 군중들 사이에 전단을 뿌리고는 흩어지는 군중들 틈에 끼어 집으로 돌아 잤다. 그 이후 서로 만났을 때도 그날 새벽의 일은 모르는 체하고 지냈으며, 얼마후 형사가 나상기 형을 학교로 찾아와 필적검사를 해 갔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별일 없이 두어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택시가 중앙일보사 건물 근처에 와서 멈췄다. 택시를 보낸 뒤 두 사람은 나를 끌고 중앙일보사 건너편에 있는 회색 건물로 데려갔다. 정문 옆에 범진 사라는 팻말이 박혀 있었다. 대문 안쪽의 초소에서 밖을 보고 있던 초병이 경례를 불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칫솔질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은 경례를 불이고, 데려왔다는 보고를 한 뒤, 나를 남겨두고 나갔다. 방 안에는 군인 두어 사람이 더 있었다. 칫솔질 하던 사람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 처음으로 경찰서 같은 곳을 끌려간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행되었는지에 대한 전후를 더듬어보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

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 나 혼자밖에 끌려온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져먹을 뿐이었다.

1시간여가 지나자 40대 정도의 짧은 머리의 사내가 들어와 한 책상에 앉았다. 사복차림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안사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준위계급의 수사관이었다.

그는 책상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손질을 하면서 무심한 어조로 나를 불러 책상옆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보는 앞에서 계속 권총을 손질을 하다가, 이를 책상서랍에 넣고는 “황인성이!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지?”하고 위압조로 물었다. “모르겠다”고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래—?”하고 가소로운 듯이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짓말을 해? 생각나게 해줄까?”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뺨을 갈기고는 앉아있는 나의 정강이뼈를 걷어찼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정말 몰라?”하고 고함쳤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동료들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모르겠다고 재차 대답하자, 그는 “이 머리에 피도 안마른 녀석이 아직 뜨거운 맛을 못봐서 이꼴이군!”하면서 주위에 있던 군인들을 시켜 아래층으로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네댓 명이 우르르 몰려와 나를 끌고 아래층으로 갔다. 차고였다. 차고 바닥에 끌어앉히고는 무릎 뒤에 각목을 갖다 끼웠다. 그리고 그들이 빙둘러선 가운데 아까 그 짧은 머리가 내려오더니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부터 나라 엎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너 지난 4월 ××일 새벽에 뭐 했어?”하고 소리쳤다.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안되겠군, 이 자식 보기와는 달리 악질인데!”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옆에 서있던 사내들이 “바른 말 안해!”하면서 허벅지를 군화발로 짓누르고 무차별 구타하기 시작했다.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벌써 코에서는 피가 터졌고, 허벅지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맹들고 뺏뺏해졌다.

두어 차례 더 육박지르고 때렸지만 나는 한사코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한 사내가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거 묶어야 되겠는데!”하면서 옆사람에게 빗줄과 물주전자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서있던

그 짧은 머리가 “그냥 뒤 ! 이렇게 어리석고 머리가 돌지 않는 놈은 고생을 좀 단단히 해야 돼. 차가 온 모양인데 태워 그쪽으로 보내 !”라고 지시했다.

“이 자식은 고생을 사서 하는군 !”하면서 사내들이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 검은 짚차에 태웠다. 짚차에는 운전수와 두 명의 사복차림의 남자가 미리 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차는 서울역을 지나 삼각지에서 왼쪽으로 꺾어졌다. 타고 있던 남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다. 고개를 숙였으나, 차창밖은 훔쳐볼 수가 있었다.

미군부대의 잔디밭과 헬리콥터가 보이는 철조망 옆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지며 차는 어떤 주택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열어주는 운동복 차림의 청년이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 !”이라고 복창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유명한 ‘서빙고 호텔’이었다.

사내들은 지하실에 있는 운동복 차림의 두 청년에게 나를 데려다 주고 가버렸다. 아마 수사를 돋고 있는 사병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쏘아 보더니 옷에 든 것을 다 내놓고, 옷을 벗으라고 했다. 옷을 벗자, 군복을 내주며 입으라고 했다. 보기만 해고 소름끼치는 옷이었다. 그 옷은 누군가의 땀이 배어있는 것처럼 습기차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군복을 입고 의자에 앉으니까, 어떤 용지를 갖다 놓고 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물고는 자기들이 받아썼다.

조금 있으니까, 군의관이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픈 데 없냐고 묻고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두어 군데를 짚어보고 갔다. 그리고는 감방에 넣어졌다. 식판에 담은 점심이 나왔으나 도무지 식욕이 생길 수가 없었다. 어떻게 내가 끌려오게 된 것인지를 감잡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했다.

순간을 대는 등 마는 등하여 점심을 물린 뒤 1시간 정도 지나자, 철문이 열리면서 사복차림의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 양쪽으로 감방이 죽 늘어선 복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꺾어지는 입구에 책상이 놓여 있고 간수격의 운동복 차림의 병사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붉은 고추가루가 가득 담긴 눈에 띄게 큰 사발이 놓여 있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물고문에 쓰이는 고추가루같아 가슴이 썩쳤다.

2층인가 3층인가의 어느 방으로 끌려갔다. 수사관은 깡마른 체구에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책상에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며,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여기가 바로 간첩잡는 곳이다. 우리가 설부르게 널 잡아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 온 이상 네가 범한 죄를 달아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막무가내 부인하고 벼텨야 한다는 각오 이외에는 달리 드는 생각이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내 선에서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치고 또 나를 쥐어박더니, 옆에 있던 사람에게 눈짓을 하는 것 같았다. 조금 있더니 몇 사람이 몰려와서 옆방으로 날 테려갔다. 그 방 구석에는 양쪽 벽이 없는 엘리베이터같은 곳에 묘한 생김새의 의사가 불박혀 있었다. 윗통을 벗은 사내들이 나의 옷을 발가벗기고 의사에 앉힌 뒤 의사에 달려 있는 벨트로 몸을 묶었다. 그리고는 양동이의 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이 간첩같은 새끼, 당해봐야 불겠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곡괭이 자루를 든 사내들이 빙 둘러섰다.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혐악한 분위기였다.

수사관이 얇고 긴 대자를 손에 쥐고 내 불을 쿡쿡 찌르면서 물었다. “지난 4월 ××일 새벽에 누구와 무엇을 했나? 바른대로 말해 !”

집에 있었다고 들려댔다. 그러자 “이 자식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이래 !”하면서 긴 자로 코 밑 입술부위를 여러차례 갈겼다. 코밑과 이빨에 큰 통증을 느끼자, 이내 입술이 터져 묶여 있는 가슴팍에 피가 뚲뚝 떨어졌다. 마치 피를 즐기는 새디스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여기서 너같은 놈 하나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앉아 있는 곳이 어떤 땐줄 알아? 죄도 새도 모르게 죽여 한강 밑으로 내보내는 데란 말이야. 잘 알아서 결정해 !”하면서 무언가를 작동시켰다.

갑자기 앉아있던 의사가 아래로 폭 내려갔다. 나도 모르게 “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게 한 뒤, 머리채를 뒤로 잡아 젖히며, “바른 대로 말하겠어, 안 하겠어 ?”하고 윽박질렀다.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에 없다고 벼텼다. 그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이 새끼 안되겠어 !”하면서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건장한 체구의 사내 하나가 내 두 발을 잡아 들어올렸다. 의사는 저절로 뒤로 눕혀졌다. 그러자 다른 사내가 투박한 곡괭

이 자루로 사정없이 두 발바닥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극도의 통증으로 입술이 말라왔고, 내려칠 때마다 귀 뒤의 골이 쾅쾅 울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왔다.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내가 소리쳤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발을 내려놓고는 다시 “부활절날 어떤 놈들과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자, 몇 차례 더욱 거세게 ‘공사’가 반복되었다.

나중에는 그들도 힘이 드는지 땀을 뻘뻘 흘렸다. 그리고는 나의 두 발을 바닥에 모으게 하고는 곡괭이 자루로 발끝을 위에서 아래로 신경질적으로 몇 번이나 눌러쳤다. 큰 발톱 두 개가 깨어지고 다른 발톱에서도 피가 배어나왔다. 한참 보고 있던 수사관이 사내들에게 그만두라고 한 뒤, “도대체 병신같은 자식이구만.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면, 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겠어? 생각을 좀 해봐. 일개 행동대원인 주제에 뭐가 무서워 말을 못하나!”하고 소리지르며,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리고는 벨트를 풀게 해서 옷을 입혔다.

잠시 후 그들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서 벽에 붙어 있는 거울 앞에 세웠다. 물을 뒤집어 쓴 데다 입술이 터져 피범벅이 되어 내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 뒤쪽의 불이 켜지자 거울은 건너편이 보이는 유리로 변하고 정면에 나처럼 군복을 입고 서있는 나상기 형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그쪽 방에서도 내가 보이는지 무언가 말을 하면서 손짓을 했다. 그러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계속 손짓으로 그만 다 시인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한 쪽이 너무 부어있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균형을 잃고 있었다. 평소에 쓰고 있던 안경도 없는 데다가 찡그린 표정이, 나보다 먼저 여기와서 당할 만큼 당했다는 것을 쉬 알 수 있었다.

불이 꺼지자, 유리는 갑자기 거울로 변해 다시 내 얼굴이 나타났다. 맥이 풀렸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형이 먼저 잡혀왔고, 그날 새벽의 일이 밝혀진 것을 알게 되었다.

수사관은 다시 나를 수사실로 데려와 앉힌 뒤, “너같은 피라미가 뭘 더 숨길 게 있어서 거짓말이야! 이 순진한 놈 같으니라고”하면서 일장연설을 했다. 나쁜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끌어들인 선배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는 어른들이라는 등,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등 동정조로 한참

이야기한 뒤, 그간 있었던 일을 쓰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주었다.

4월 21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일을 기억해 쓰면서 나와 같이 행동했던 한국기독학생회 임원들의 이름만 열거하였다. 다행히 나상기 형의 진술과 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당일 사건에 대한 진술서가 어느 정도 끝나자, 그들은 내가 한국기독학생회에 가입한 경위와 그의 학내활동 등 주변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쓰게 한 뒤, 밤늦게 다시 지하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온몸이 쑤시고 잘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감방으로 돌아오자 한결 마음이 편했다. 그제서야 나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 감방 어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후에 누가 감방 복도로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내 방 건너편의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철문 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았더니, 운동복 차림의 사병들이 군작업복 차림의 사내를 끌고 와 방에 넣고 있었다. 권호경 전도사였다. 그들이 문을 잠그고 가자, “주여!”하는 탄식과 함께 풀석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엄청나게 당한 모양이었다. 자꾸 귀에 음산한 괴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면서 겨우 잠이 들었다.

그후 이틀간 나는 불려나가지 않고 감방에 있었으나, 권호경 전도사는 아침부터 끌려나가 밤에야 돌아왔다. 감방에 들어서자마자 예의 “주여!”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쉬 알릴 수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수사실로 불려 올라가 조서를 작성했다. 다음날 새벽, 감방을 지키는 사병이 와 나를 깨웠다. 눈을 비비고 나와 처음 끌려왔던 방으로 안내되었다. 수사관이 거기 있었다. 종이를 내주며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여기서 조사받았던 사실과 이 건물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입고 왔던 옷과 신발이 주어졌다. 옷을 갈아 입고 밖으로 끌려나왔다. 밖은 아직 깜깜했으며 새벽공기가 매우 찼다.

마당에는 앰뷸런스 한 대가 시동이 걸려 있었다. 뒷문으로 차에 올라타니, 정명기, 서창석, 이상윤이 사복차림의 사내들 사이에 앉아있었다. 오랜만에 서로 엉뚱한 곳에서 얼굴을 대하게 된 것이다.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각기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남대문 경찰서로 넘겨져 구류 29일의 처분을 받았다. 후에

알고보니 바로 그날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전도사 등은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구속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나로서는 계획의 전체 윤곽을 전혀 모른 채 단순행동에 그친, 지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혹심한 구타와 공갈·협박·고문을 당했는데, 구속된 사람들이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것은 쉽게 상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 이후 10·2 서울문리대 데모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실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있었던 사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배후추궁과 사건내용 조작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고문·용공조작 영원히 사라져야

대담자 / 김병진 : 김동완

일 시 / 1988년 10월 12일 오전

장 소 / 일본 대판시 U. R. M. 사무실

보안사—정권유지를 위한 수구

동 : 김병진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사무국장 김동완 목사입니다. 「보안사」라는 책을 쓴 김병진씨를 오사카에서 만나 이 문제가 인권문제의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병진씨의 경험을 교회, 야당, 인권단체 등에 알려 다시는 보안사가 고문용공조작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병 :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오니까 외롭기는 합니다만 가족들하고 그런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 : 지금 심정은 어떤지

병 : 제가 일본에 온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 책을 못쓰기 때문입니다. 원해서 한국을 떠난 것이 아니고 보안사라는 기관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온 것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나와 교포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한겨례신문』에 나기로는 김병진씨가 증인으로 올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보안사」라는 책 문제 내지 보안사에서 고문을 해서 용공조작을 하고, 김병진씨를 보안사 요원으로 일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병 : 증인으로 나서고 싶은 이유는 말 못할 경험을 직접 했고, 또 이 경험을

가슴 속에 담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잡히고 난 이후 보안사 요원으로 일해온 사이 많은 희생자를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쉽든 좋든 수사관으로서 조작극에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입다물고 산다는 사실이 우선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치스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경험했던 일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증언으로 나서겠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동 : 1973년에 저도 역시 보안사에서 고문을 받고 그들이 조작하는 대로 내란예비음모죄를 뒤집어 쓰고, 박형규 목사 등이 감옥을 가는 —— 무죄가 됐긴 했지만 —— 등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보안사가 정부나 통일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도리어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구가 돼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인간을 고문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함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김병진씨의 경험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는데, 만일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증언을 하고 싶은지 ……

병 : 제가 겪은 일들은 책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보안사라는 기관은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조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공업무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보안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주된 활동부처로 대공처라는 정보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군 본연의 사명보다는 개인의 수치스런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합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동 : 1973년에 저도 역시 보안사에서 고문을 받고 그들이 조작하는 대로 내란예비음모죄를 뒤집어 쓰고, 박형규 목사 등이 감옥을 가는 —— 무죄가 됐긴 했지만 —— 등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보안사가 정부나 통일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도리어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구가 돼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인간을 고문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함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김병진씨의 경험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는데, 만일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증언을 하고 싶은지 ……

병 : 제가 겪은 일들은 책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보안사라는 기관은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조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공업무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보안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주된 활동부처로 대공처라는 정보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군 본연의 사명보다는 개인의 수치스런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합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고문 · 용공조작 책임자 마땅히 처벌해야

동 : 책을 쓰신 것 말고, 인권적 피해에 대해 고소,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요?

병 : 문제가 되는 것은 간첩죄의 해당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국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조국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을 비교해 보는 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김일성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뜻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보법 체계하에서는 그러한 것들 까지도 위법성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보법이란 법의 존재부터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 법개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나를 밝혀야 합니다. 최근에 석방된 김철언, 이철씨를 비롯하여 얼마 전에 석방된 서준식씨,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억압받고 차별을 받던 사람들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간첩이 된 경우입니다. 특별히 김병진씨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제에 의해서 그들의 협력자로 이용되는 비극을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했던 장본인들 —— 이미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 이 고소, 고발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기관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특별히 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들을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주인공은 당시 대통령이고, 이 일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보안사령관들이 공동의 책임자들로서 고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름이라도 얘기해 보시면 ……

병 : 실질적으로 고문을 해왔던 사람으로 당시 대공처 수사과의 김용성 육군 소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고문한 다음에 제가 국내 학생들을 선동해서 폭력화하는 데 노력했다는 식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극에 가담했던 사람으로는 수사 2계 학원반 반장 고병천 준위라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저의 담당수사관이었던 이덕룡 해군준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먹으로 저를 다스렸었고, 엘리베이터실이라는 밀실에서 고문을 가했읍니다.

동 : 저도 1973년에 엘리베이터실이라는 데서 고문을 당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본 상황대로 얘기하면 미국영화에 나오는 가스실과 비슷합니다. 의자에 앉히고, 팔·다리를 묶은 뒤, 버튼을 누르면 붕 – 올라갔다가 붕 – 떨어지게 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엘리베이터 고문실입니다. 거기에는 기초적인 고문단계에서 쓰이는 고춧가루, 고문, 폭력을 동원한 고문 등이 뒤따릅니다. 이미 알다시피 권인숙양에게 성고문을 했던 문귀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김근태씨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캐네디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가했던 자들이 아직도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문을 전문적으로 해서 괴롭혔던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했던 고문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 3년동안 보안사와 관계하면서 보아 왔던 고문들 중에는 제가 당했던 것보다 더 지독한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관들은 속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공사'라고 부릅니다. 공사의 종류에는 전기공사, 수도공사 —— 이것은 다시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로 나뉘지고 ——,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아 왔던 것 중에 인상깊었던 것은 인간 바베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춧물을 먹이는

고문인데, 사람을 각목에 달아 묶는 그 모습이 고기를 굽는 모습과 흡사해서 붙여진 고문입니다. 호흡을 못하게 해놓고서 고춧물을 먹입니다.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기절을 하는 것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바른 해명 위해 국회증언 수락할 터

동 : 통닭구이라고 하는 경찰고문이 있는데 사람을 통닭 굽듯이 하는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여하튼 고문에 대해서는 김근태씨나 권양의 성고문, 박종철씨의 물고문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진씨가 「보안사」라고 하는 책에서 쓴 보안사의 고문이라든지, 보안사가 국보법을 역이용해서 재일교포들을 감옥에 보낸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사라는 책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문제를 삼아 〈소나무〉출판사로부터 책을 압수하고, 국가기밀 누설죄라는 영장을 가지고 모든 책방을 뒤지며 압수해 간 것도 명백히 위법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보안사」책 내지 보안사 문제를 다룰 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면 보안사에서 누가 나와 얘기하게 될 텐데, 그들이 「김병진은 영웅주의자다. 우리에게 빌면서 생명을 살려달라며 우리 직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수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놈이 변심하여 배신했다. 또는 그가 자기 가정이나 부인이나 주변 생각을 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던 놈이 자기 영웅주의, 정신적인 착란으로 변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김병진씨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이용할 경우 직접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주의자라든가, 정신병자라든가, 배신을 했다든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말에 대비해 답변해 주시지요. 물론, 직접 본인이 국회에 오시는 것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척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보안사 사람들이 또 연극을 만들거나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 : 우선, 제가 임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김용성 계장이 많은 말들을 하고, 저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만 결국은 당시 백일이 채 안된 장남을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인간적인 약점이 잡혀 제가 진 것입니다. 제가 지면서 보안사에 임용될 때는 물론 각서 비슷하게 그런 문서를

썼습니다만,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그들의 협박공갈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지킬만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웅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의 소지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아주 수치스런 짓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유죄로 몰기 위해서 검사측 증인을 서야 했고, 통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사과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 책을 쓴 것은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오직 그것 뿐입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기밀, 국가기밀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러한 폭력과 만행을 언제까지 감싸야 합니까?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고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직접적인 감시받고 있어

동 : 저도 1973년 보안사에서 근 20일 동안 고문을 받고 박형규 목사, 권호경 목사, 남삼우 선생 등이 기소되고 저는 29일 구류를 받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사가 나를 검찰측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신문에서는 구류로 넘어갔다고 해놓고는 서빙고의 서쪽, 제일 큰 방에서 3일간 대접을 잘해준 뒤 소위 프락치를 시키기 위한 망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저도 3일간 그들을 만났었는데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좀 만들어 설악산 산속으로 도망가 한달간 살면서 그 사람들과 줄을 끊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책을 쓰신 이후에 보안사에서 귀찮게 굴면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한국·일본에 소문이 나기로는 일본 야꾸샤를 통해서 테러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책을 쓰신 이후에, 〈소나무〉출판사가 책을 낸 이후에 보안사가 직·간접적으로 감시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병 : 제가 직접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낀 점은 최근, 한 달쯤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두 명이 우리 집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간 것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소재확인의 필요에 의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그 이

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저도 걱정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오는 것보다는 국내 친척 중에 공직에 계신 분을 보안사 예하 보안부대장이 호출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안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야비한 방법으로 저와 저의 친척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안사에서 책임을 지고 신사적으로 대해주었으면 합니다.

나로 인해 간첩된 사람들에 무거운 죄책감이

동 : 특히 제일 괴로운 점이 있다면 김병진씨가 강요에 의해서 한 일 때문에, 이미 책에도 나와 있읍니다만, 조신치라든지, 유지길, 그의 가명으로 쓴 많은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게 한 점일 거예요. 그들 중에는 ‘김병진 때문에 징역을 살고 고문을 당하고 간첩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들 중에 조신치, 유지길 등은 감옥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김병진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언을 서주겠다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김병진씨와의 관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 : 제가 수사에 관계해서, 간첩을 만드는 데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괴로움을 맛봤고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자는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징역을 살고 일본으로 돌아온 조신치 군이 절 찾아와서 간첩이 된 배경을 따져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책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가 하는 말이 “잘 써주었다, 고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은 듯했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주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여기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길씨라는 분은 기막힌 날조국의 희생자였었는데, 그 당시 조사과정중 통역으로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입북간첩으로, 공판에 나가면 틀림없이 사형이 언도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공소보류로 풀려났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계신데 이 분은 제가 일본에 오자마자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안하게도 이분이 고문당하는 수치스런 장면을 드러냈읍니다만, 이분도 저의 책을 보시고 저의 뜻에 동참해 주고 있읍니다. 나머지 몇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만, 한국에서 6월에 가석방되어 현재 일본에 오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 중에 제가 직접 통역을 해주고 간첩으로 만든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사과드려야 하고, 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안사라는 조직이 이런 사건들을 조작해내고 있다는 부분에 눈을 돌려 주신다면 저로서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미안한 말이지만 피의자로 끌려온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비굴한 장면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패배하고 간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극을 자아내는 보안사에 대해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심정에서 책을 썼고, 또 그런 심정으로 있읍니다.

보안사—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동 :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어 군인이 없을 수는 없는데, 60만 군인의 일부인 보안사의 문제 때문에 그외 군인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도 상할텐데 그런 군인들에 대한 심정은 어떠한지요?

병 : 저는 보안사에 근무하면서 일반 군인들도 많이 보아왔읍니다. 가까이는 보안사에 정집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의 모습을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사병들은 국방의 승고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보안사 간부들의 개인적인 요구 때문에 피해보는 사병들도 많이 보아왔으며, 일반 부대에서도 ‘보안부대’ 하면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부대로 인식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후방에서 일반 국민들을 뜯살게 구는 보안사라는 조직에 대한 반발감은 일반 군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안사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일반 군인의 사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 : 고맙습니다. 김병진씨는 잘 모르겠지만, 1983~4년에는 테모를 한 학생들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강제징집이라 하여 군대에 보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보안사가 특별히 책임지면서 녹화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읍니다. 녹화사업에 관계된 학생들 중에 83년도에 6명이 죽었읍니다. 한회철을 비롯한 사람이 죽었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일주일 구류를 살았읍니다만, 카츄사의 김용권이 녹화사업에 관계하여 죽었읍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정상병이 기호 1번 노태우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아 죽었읍니다. 또 최근에는 경주에서 최종 군이 보약을 안해왔다고 해서 부대에서 죽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죽었고, 또 그 외도 많읍니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청교육 사건에서 약 50명이 강제훈련을 받다 죽었읍니다. 물론 전두환 정권 때의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5공화국 이후 군대 내의 의문사 사건규명 및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읍니다. 저도 집행위원장을 맡아 일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군인들 내의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직을 통해 싸우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인들이 그 의무를 다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지금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다 군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군사비를 줄이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진씨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가장 중요한 건 남한사회의 민주화

병 : 녹화사업에 대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화사업이란 보안사 대공처 내의 심사과라는 데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원래 소위 의식화 학생에 대해서는 보안사 내에서 정보처 업무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가 신설되면서 의식화 학생의 반정부 활동이라는 것이 대공업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반정부는 복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사고방식을 말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놓았습니다. 여기로부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는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한사회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북한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운운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북한 김일성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의가 진정으로 반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바라고 싶습니다.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민주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 : 선민주화, 후통일 그런 논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물론 민주화도 되어야 겠습니다만, 통일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동의하시겠죠?

병 : 예, 물론 그렇습니다.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료를 널리 알리는 데 동의하겠읍니다.”

동 : 여러가지 탄압을 당하면서도 용감하게 「보안사」를 출판해 주신 〈소나무〉출판사 사장님이나 직원들, 또 그 책을 파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책방 사람들에 대해 하실 위로의 말이나 표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병 : 지금도 〈소나무〉출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인하여 싸움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 일없이 신변이 안전하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싸움을 통해서 보안사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써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중성 있게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동 : 저와 함께 한 얘기를 녹음테이프에 담아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나 국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쓰여지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 : 고맙습니다. 물론 동의하겠읍니다.

동 : 끝으로 가족들의 건강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물론 끝

내 보안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만 …

병 : 저의 가족은 도망오다시피 일본으로 왔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활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던 사람이지만 저의 처는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에 익숙해지고 고아원에 보내겠다던 저의 장남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겨레입니다. 또 일본에 와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나래입니다. 지금 생활은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본국의 상황이지, 우리 생활은 그럭저럭 되고 있으니까 혹시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동 : 보안사에서 한 사건 중 지금도 한국의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박형규 목사의 제일교회 사건입니다. 보안사에서 사건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도 중부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깊이 관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보안사의 신동기라는 사람인데, 그가 홍성규라는 꽝꽝조직을 동원하여 박형규 목사를 테러했고, 지금까지도 3년째 길거리에서 예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측에서 보면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 보안사의 중요한 사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신동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보안사가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노정권 민주화 의사 거짓 아님을 증명해야

병 : 신동기라는 사람은 수사과 수사5계 수사관, 문관입니다. 저의 같은 동료였고, 그는 재주 많고 노래도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라서 인간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만, 이러한 사건을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은 절대로 일개 수사관인 신동기 혼자서 벌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안사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동기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 보안사에 근무하면서도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 :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군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므로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끝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도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 통일도 하겠다, 이북도 가겠다'라는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군 내 엄정중립을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 : 노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한 선언이나 방침, 방향을 많이 얘기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밀반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법적인 개혁 등이 수반되어야만 그 말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안사라는 조직뿐 아니라, 이제까지 국민들을 괴롭혀온 정보공작 전체의 체질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보여야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밝힌 민주화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 고맙습니다. 김병진씨의 견투와 가정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4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의뢰의견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답신 수록.

인권위발 88-61호

1988. 9. 23.

수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표간사

제 목 :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의뢰의견

주님의 은총이 대표간사님과 귀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최근 소나무 출판사가 발행한 「보안사」책자 압수·수색을 위해 출판사 앞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이근윤 판사는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근거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9월 22일자 5면 기사) 따라서 영장발부 후 이 책의 압수를 위해 보안사 요원들이 직접 전국서점에서 이책을 압수하고 있는 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 그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귀회에 의뢰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귀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8. 9. 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민 변 88-
 수 신 NCC인권위원회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질의회신

귀 위원회 88-61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의뢰의 건에 관한 회신입니다.

1. 의견

- 1) 책(보안사)의 내용이 현행법상 검사지휘 아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의 특정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보조기관인 군 보안부대 수사과정을 공개한 내용으로서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물론, 군사기밀 누설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2) 압수, 수색할 서점 및 보관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의견임.

2. 첨부

- 1) 의견서
- 2) 관련법조문 발췌

1988.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간사 조 준 희

의견서

1. 소나무 출판사 간행의 책 「보안사」의 저자 및 출판자가 군사기밀 보호법(1972. 12. 26 법률 제2387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출판물 등에 의한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의 구성요건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군사상 기밀의 취급을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업무로 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11조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위 책의 저자와 출판자가 위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군 보안부대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실체법적 절차법적 근거 및 그 수사 과정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가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군사상 기밀'

군사기밀보호법의 소정의 '군사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상의 기밀로서 법제2조 및 동법 별표 및 시행령에 의하여 유형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뜻하며 그 보호조치로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상의 기밀임을 명백히 표시, 고지하거나 또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기밀보호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위 법 및 동 시행령이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군사상 기밀'은 불확정 개념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구체화될 성질의 것이라고 사료되나 처벌별조와 결합하여 고찰할 때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더우기

형법상 간첩죄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가보안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따로이 '군사기밀'만을 보호법으로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적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되나 이는 본건 질의와는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3)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의 법적근거

가. 군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형사소송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사기관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군형법 제1조, 동 제43조 2호, 동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군 보안부대 소속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군수사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나. 군 보안부대의 민간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군 보안부대 요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군사기밀보호법 제19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2 항(1981. 12. 31 신설)규정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다. 군 보안부대가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경우 적용될 절차법

군 보안부대 소속 요원이 위 법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민간인을 수사할 경우에 적용될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인지 아니면 군형법법인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옹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직무 수행에 앞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그 권한이 수여되고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수사자획을 받도록 규정된 취지로 보아 군 보안부대 소속 요원이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검사를 보조하여 그의 감독 아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 아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

되어 있는 바, 이때 군법회의의 재판은 공판절차 뿐만 아니라 그를 전제로 하는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사료되므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군법회의 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을 전제로 하여 민간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나 이는 본건 질의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4) 수사과정의 체험을 공표하는 행위가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나무 출판사 간행의 책 「보안사」의 내용은 재일교포 유학생이 보안사에 연행되어 무고한 범죄혐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반하는 고문수사를 받았던 피의자로서의 체험과 그 후 공소보류 처분되어 그 기간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부대에 출근하면서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관찰대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다른 재일교포 유학생 수사과정에 통역자로서 관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위 책에 의하여 공표된 내용은 군보안부대가 정식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여 민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들을 기술한 것으로서 현행법 체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자획나 감독 아래서 행하여지는 형사소송법 절차내에서의 범죄수사 행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자 등이 그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반하는 위법수사임을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였다 하여 피의사실 공표죄 구성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군사기밀 누설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자가 군 보안부대의 수사상의 보조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서(만약 그러한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가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헌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에서 저자가 관여하였던 사건이 모두 기소(공판청구)되었다면 이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를 구성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책 내용 중 일부 보안부대의 소재나 그 지휘관 및 일부 구성원의 성명을 열거한 행위가 군사기밀 누설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고 보나 그러한 의문은

첫째 공표된 내용이 책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검사의 지휘 감독 아래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수사 담당자들의 성명과 행위에 관한 상황으로서 이를 군사상의 기밀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공표된 내용이 적어도 저자가 책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 것으로써 공표됨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군기법 제1조) 등에 비추어 위 책을 저작 출판한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죄 등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서점주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9호, 동법 제11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수사업계에서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및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행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실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절차적인 요건으로서는 영장의 제시(법 제219조, 제118조),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통지(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없이(사후 영장 포함)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속영장집행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법 제216조), 긴급구속시의 압수·수색(법 제217조),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의 압수(법 제218조)의 경우가 있으나 본건 질의의 경우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질의와는 직접관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의 취지는 강제처분에 수반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는 데 있으며, 수사업계의 강제처분은 임의수사원칙의 예외조치로서 최소한의 처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장주의는 일반영장금지를 그 주요한 내포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영장이

라 함은 압수·수색할 대상과 장소·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등 영장의 실체적인 요건에 속하는 사항을 특정할 수 없도록 기재함으로써 강제처분 제한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영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하는 이유는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영장주의의 취지를 관철하자는 것입니다.

3) 귀 위원회의 질의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일반영장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압수·수색할 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영장으로 불특정의 서점을 압수·수색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것입니다. — 이상 —

관련 법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7조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군법회의법 제43조 2호 및 제46조 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1981. 12. 31 신설)

3) 군법회의법 제43조 2호

군사법경찰관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군법회의법 제46조

군사법경찰관리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1981. 4. 17 신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1항 3호 및 별표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

- 가. 첨보수집 또는 방첩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집행상황
- 나. 첨보수집활동 또는 방첩활동의 수단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첨보기관 또는 방첩기관의 편제 배치 및 업무
- 다. 군이 보유하는 적의 군사기밀

*1항 6호 및 별표

군의 중요부서의 인사에 관한 사항

군 고급지휘관 또는 특수부대의 지휘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 4 조 기밀보호상의 조치

제1항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상의 기밀에 대하여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그 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기밀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사상의 기밀의 관리·취급·표시 및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업무상 누설

제1항 군사상 기밀의 취급을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업무로 하였던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처벌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9조 검사의 수사지휘

제1항 군법회의법 제43조 제2호 및 제46조 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위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할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제1항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기밀 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의 분류와 동시에 군사기밀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별표) 군사기밀의 분류기준

*군사 1급 비밀

제 4 호 군사상 중요한 전략 수집활동 및 완성된 군사정보 계획

*군사 2급 비밀

제 2 호 국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사상의 비밀 활동·조약 및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과 국가방위 계획 및 그의 효과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 사항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 부대의 임무·배치 또는 행동에 관한 사항

제 6 항 군기관의 첨보수집 또는 방첩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집행사항

*군사 3급 비밀

제 5 호 군의 첨보수집활동 또는 방첩활동의 수단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와 첨보부대 또는 방첩부대의 편제·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12호 군의 중요인사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 및 군사경력에 관한 사항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지휘관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원칙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

제114조 1항(영장의 방식)

압수 및 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압수할 물건 및 수색
할 장소·신체·물건·발행년월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면 집행을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
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5조 1항(영장의 집행)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
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21조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

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 (영장 집행과 거주자, 간수자의 참여)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2.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구속영장 집행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하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및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압수, 수색, 검증(후자의 경우 사후 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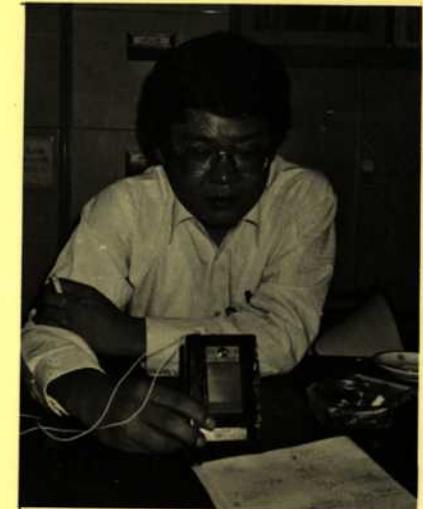
(이 경우 법 제123조, 동 제125조 배제, 이유는 구속영장의 제시가 있
으므로)

나. 형사소송법 제217조

긴급구속시 구속대상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
후영장 발부시까지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하는 경우

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의 압수



김병진 / 1955년 일본 고오베 출생. 83년 연세대 대학원에 다니던 중 보안사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발표되었으나 보안사에 특채되어 2년 근무. 86년 2월 일본에 돌아가 그의 체험담 「보안사」집필

“노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한 선언이나 방침, 방향을 많이 얘기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밀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라던가 법적인 개혁 등이 수반되어야만 그 말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안사라는 조직뿐 아니라, 이제까지 국민들을 괴롭혀 온 정보공작 전체의 체질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보여 주어야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밝힌 민주화의 의사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진 (김동완 목사와의 인터뷰 중에서)